

# 충남 꿈비채 아산배방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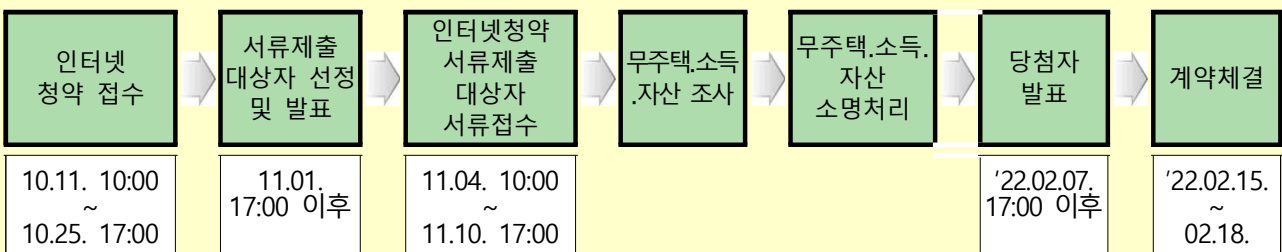
## 1. 건설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복수리 1873 번지 행복주택 600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충남 꿈비채 아산배방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27.) 기준으로 해당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에게 공급됩니다.
- 공급대상자에 따라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본문의 세부임대조건, 자격, 청약절차 기타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입주자격(요약안내)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 가족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https://apply.cndc.kr/>)로 받습니다.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마감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오시면 <충남 꿈비채 아산배방 상담소>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행복주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해당세대 전원의 소득자산을 확인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문의 : 041-531-4861)



##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 단지정보

단지명	위치	총세대수	규모	입주예정
충남 꿈비채 아산배방 행복주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873번지	600호	지하 2층 ~ 지상 25층	'2022년 7월

### ■ 임대대상

공급유형	공급대상	호수		최대 거주 기간 (년)	세대 당 계약면적(m <sup>2</sup> )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36	주거급여 수급자	42	18	20	36.9126	15.9028	6.6677	23.4881	82.9712	202	철근 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44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126	54	6~10	44.7994	19.3006	8.0925	28.5064	100.6989	201, 204, 206, 210	
A		52	22	6~10	59.4573	25.6155	10.7404	37.8335	133.6467	209, 210	
B		117	50		59.6696	25.707	10.7785	37.9686	134.1237	203, 205, 207, 208	
59 C		12	4		59.6600	25.7028	10.7769	37.9625	134.1022	203, 207, 208	
D		12	5		59.6600	25.7028	10.7769	37.9625	134.1022		
E	61	25	59.4758		25.6235	10.7437	37.8452	133.6882	203, 205, 207, 208		

※ 청약시스템의 공급유형 표시, 위 공급유형의 청약구분 표시는 청약과 계약 관리를 하기 위한 단순 구분표시 이므로 공급형의 주택구분을 기준으로 청약대상 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해당주택의 순수한 주거용도의 바닥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현관, 복도, 계단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으로,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임대조건

구분	보증금(원)	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계	계약금	잔금	
36	주거급여수급자	30,000,000	3,000,000	27,000,000	90,000
4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0,000,000	4,000,000	36,000,000	110,000
59		50,000,000	5,000,000	45,000,000	150,000

※ 입주 후 자녀출생에 따라 월임대료 감면 → (1자녀) 50%, (2자녀) 무료

- 공급신청은 공급유형(청약구분)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될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당첨자 외 공급유형별 모집호수의 100%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주택 발생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동호배정은 전산추첨)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거전용면적(소수점이하 절사)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거전용 면적외 주거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면적 등의 변경으로 임대조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위 임대조건외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무주택, 소득,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계약자는 계약해지) 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 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체도 불가합니다.
-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빌트인으로 설치되는 세대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대에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향후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여건 등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용 및 주차장 면적, 단지내·외부환경, 입주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공급단지,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 유흥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인근 악취발생사업장(축산시설, 비료제조업) 및 봄·가을 채소농사 등에 의한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㉒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㉑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①-㉓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①-㉒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㉑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자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100%)	월평균소득금액(120%, 맞벌이)
2인	5,018,789원 이하(110%)	5,931,296원 이하(130%)
3인	6,240,520원 이하	7,488,624원 이하
4인	7,094,205원 이하	8,513,046원 이하
5인	7,094,205원 이하	8,513,046원 이하

\* 6인 이상의 해당 가구는 5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맞벌이 461,251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재혼기간을 포함하며, 동일인과의 재혼시 최초 혼인신고일 기준)을 합산합니다.(예 : 전체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초과인 경우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같은 세대로 구성될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며, 2인 모두 각각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2개 모두 청약 탈락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충청남도 아산시, 연접지역(충청남도 천안시, 당진시, 공주시, 예산군, 경기도 평택시 )이 “대표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2순위	충청남도(단, 1순위에 해당되는 지역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가 “대표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27.)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 청약 및 서류제출에 오류가 없으며 자격을 갖춘 우선공급대상자가 '우선공급' 추첨에서 탈락하였을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추첨 대상자로 전환됨
- ※ 우선공급 자격기준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
- 자격 : 예비신혼부부 및 혼인 2년이내 신혼부부로서 ①또는 ②를 충족

충청남도에	①거주하는 자
	②소득근거지가 있는 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27.)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자격 : 신청자 본인이 충청남도에 5년이상 거주한 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충청남도에 계속하여 등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예) 충청남도 거주 후(1990.1.1~2010.1.1) → 타지역 전출 후 → 충청남도 전입(2016.1.1) 시 2016.1.1부터 기간 산정

##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추첨
일반공급	추첨

※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p>▶ 인터넷청약</p> <p>2021.10.11(월) 10:00 ~ 2021.10.25(월) 17:00</p> <p>*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을 제외한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p>	<p>2021.11.01(월) (17:00 이후)</p> <p>(확인) 주택청약센터 (<a href="https://apply.cndc.kr">https://apply.cndc.kr</a>)</p>	<p>2021.11.04(목) ~ 2021.11.10(수)</p> <p>(등기우편) 발송주소 아래 서류제출방법참고</p>	<p>2022.02.07(월) (17:00 이후)</p> <p>(확인) 주택청약센터 (<a href="https://apply.cndc.kr">https://apply.cndc.kr</a>)</p>	<p>▶ 전자계약 2022.02.15(화) 10:00~ 2022.02.18(금) 17:00</p> <p>▶ 현장계약 2022.02.21(월) 10:30 ~ 16:00 (12-13시 점심시간 제외)</p>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https://apply.cndc.kr>)로 받습니다.
- \* 인터넷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 개인 휴대폰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충남 꿈비채 아산배방 상담소>로 방문하시면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 현장접수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주택청약센터(<https://apply.cndc.kr>)에 별도 게시합니다.
-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는 지정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는 주택청약센터(<https://apply.cndc.kr>)에 공지하고, 따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 \* 최종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거시 주택청약센터(<https://apply.cndc.kr>)에 별도 게시합니다.

- \* 당첨자 발표는 주택청약센터(<https://apply.cndc.kr>)에 게시됩니다.
- \* 입주시까지 주택청약센터(<https://apply.cndc.kr>)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못할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 하며, 주택청약센터(<https://apply.cndc.kr>)를 통해 게시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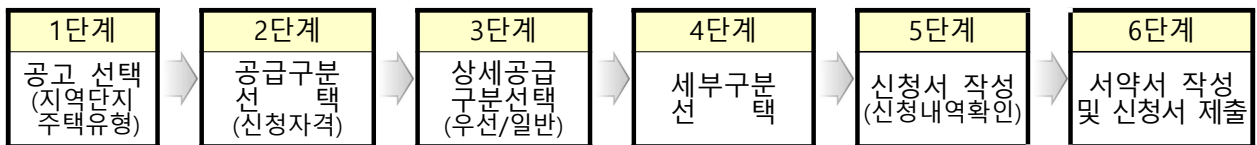
-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주택청약센터(<https://apply.cndc.kr>)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이 어려운신 분들은 개인 휴대폰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충남 꿈비채 아산 배방 상담소>로 방문하시면 청약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주택청약센터(<https://apply.cndc.kr>)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 청약시스템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5시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접속자 폭주 등에 의한 일시적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해서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nternet-explorer 버전 10이상에 최적화 되어 있어 버전이 낮을 경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높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크롬 등의 다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5시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신청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청약센터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021.11.04. ~ 11.10.)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2021.11.10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서류 제출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라며, 기한이 경과한 서류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 \* 등기서류 발송후 접수여부 확인은 우편물이 많은 관계로 신속한 유선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우체국홈페이지-국내우편(등기)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등기우편발송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1층 판매부 <행복주택 담당자 앞>
- \* 봉투 겉면에 "꿈비채 아산배방 행복주택"으로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09.2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li> <li>*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li> <li>*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li> </ul>	1통 (공고문)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li> <li>※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li> </ul>	1통 (공고문)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li> <li>*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li> <li>*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li> <li>※ 출자금/출자지분, 비상장주식 : 관련 입증서류</li> <li>※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에 표시하여 정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li> <li>※ 주거급여수급자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 제외</li> <li>※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li> </ul>	1통 (공고문)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li> <li>• 작성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li> <li>※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li> </ul>	1통 (공고문)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li>•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행정복지 센터)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lt;아래 해당자는 반드시 제출&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li> <li>•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li> </ul> </li> </ul>	1등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li> <li>※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li> <li>•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li> <li>•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li> </ul>	1등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li> <li>&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li> </ul>	1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li> </ul>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li> <li>•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li> <li>•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li> <li>•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li> <li>-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li> </ul>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아래 해당자는 반드시 제출&gt;</li> <li>[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li> <li>•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li> </ul> </li> <li>[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li> <li>-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li> </ul> </li> <li>[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li> <li>※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li> <li>국민연금공단</li> <li>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li> </ul>
주거급여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li> </ul>	행정복지센터
재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자가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적증명서</li> <li>- 임대차계약 확인서류</li> </ul> </li> <li>•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li> <li>행정복지센터</li> </ul>

##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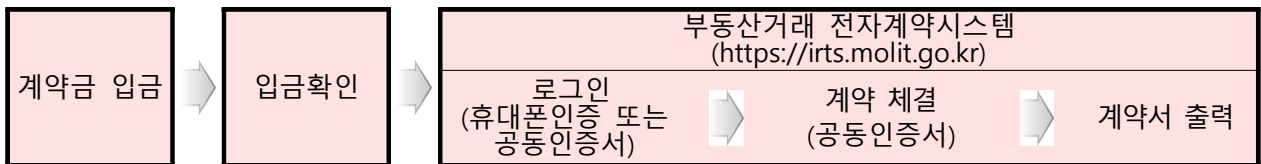
### ■ 당첨자 발표 : '2022.02.07(월)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우리공사 주택청약센터(<https://apply.cndc.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 계약안내

- 전자계약 및 현장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주택청약센터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통보(예정)
- 전자계약 [기간 : '2022.02.15(화) 10:00 ~ 02.18(금) 17:00]
- 계약시에는 퇴거확약서(갱신계약자격 미충족 시 60일 이내에 퇴거함)을 공증받아 우편 제출
  - 보내실 곳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1층 판매부 <행복주택 담당자 앞>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계약사실 통지 및 계약안내는 청약자가 기입한 휴대폰 번호 및 주소로 송달되며, 오기입으로 인한 계약사실 미도달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 인터넷 사용 등의 전자계약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서 도와드리며,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 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 현장 계약 [기간 : '2022.02.21(월) 10:30 ~ 16:00, \*12-13시 점심시간 제외]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시 계약 포기로 간주
- 계약체결 장소 : 충남 공비채 아산배방 상담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복수리 1873)
  - \*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계약은 코로나 19 진행상황 및 정부와 지자체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 또는 전자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시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반드시 제증명 서류 지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li> <li>•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li> <li>•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li> <li>•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li> <li>• 퇴거확약서(퇴거사유 발생시 60일 이내 퇴거, 공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li> <li>• 배우자 외의 자 -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li> </ul>

##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화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ul> </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i> </ul> </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ul>
총자산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li> <li>•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li> <li>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ul> </li> <li>•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 공공기관 대출금</li> <li>•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ul>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li> <li>-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li> <li>-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li> <li>-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li> <li>-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li> </ul>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li> <li>-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li> <li>-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li> <li>-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li> </ul>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li>-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li> <li>-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li> </ul>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li>- 사업자등록증</li> </ul>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기타 자산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b>■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입주자격</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p><b>■ 재청약 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li> <li>-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주택공급신청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가 변경된 경우</li> <li>-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li> </ul>						
예비입주자	<p><b>■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li> </ul>						



<p>자동차 등록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주택 단지 주차등록 허용대상은 고가차량이 아닌 ①임차인 등의 소유차량 ②임차인 등의 전용차량(임차인들이 전용하는 렌트·리스차량에 한정함)이며, 이외 차량은 주차등록 및 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li> <li>* 고가차량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입주자격 기준 자동차가액 초과 차량</li> <li>국토교통부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가액(공고일 기준 3,496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자동차를 고유(지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 전체를 산출함)을 초과하는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p>갱신계약 등</p>	<p><b>■ 갱신계약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li> <li>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li> <li>*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li> <li>- 신혼부부 계층·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li> </ul> </li> <li>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li> </ul> <p><b>■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li> <li>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을 적용하고, 자녀출생에 따른 월임대료 감면혜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li> </ul> <table border="1" data-bbox="296 1155 1469 1440">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갱신계약시 자산·자동차가액을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합니다.</li> </ul>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p>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li> <li>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li> </ul>														
<p>중복입주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li> <li>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li> <li>*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li> </ul>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i> </ul>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li> <li>•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시 신청자가 기입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당첨사실을 통보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 오기입으로 인한 당첨사실 통보 미도달로 당첨 및 계약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li> <li>• 계약시에는 퇴거확약서(갱신계약자격 미충족 시 60일 이내에 퇴거함)를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이후 주택매입(분양권 취득 포함)등으로 인한 퇴거사유 발생시 주택 매입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우리공사로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li> </ul>
지구 및 단지특성	<p><b>① 지구 및 단지여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li> <li>• 본 지구는 행복주택 600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인근 축산시설(배방읍 현대세교길 157-376-384, 탕정면 갈산리 367-2 및 천안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107-4 일원), 비료제조시설(천안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119-7 일원) 및 봄·가을 채소농사 등의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단지구주변 도시계획도로, 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민의 방범을 위해 동출입구,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CCTV가 설치됩니다.</li> <li>•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 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부대시설 및 어린이집 인접세대는 실외기 설치 및 냉각탑 가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외부디자인 벽체줄눈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경계의 담장 및 조경석 쌓기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임대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이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204동) 및 주민 편의시설 측면에 단지 전기인입용 한전시설물(PAD S/W, PAD TR)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 특성상 이사 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출입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 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급수, 오배수 배관이 설치되어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단지 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및 시설물(재료,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 4개소, 자전거보관대 17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설치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공원의 산책로 및 조경시설은 개략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611대(지하주차장 601대, 근린생활시설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 전기차충전 주차면은 급속충전 3면, 완속충전 6면입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7m 이하로 탐차 및 이사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속동에는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붕층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동별 설치 면적 및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내 보안등 설치로 인해 눈부심 및 수면장애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용,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에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각동에 1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보육 관련시설은 지자체 의견 및 관계법령에 따라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부에 비상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203동 아파트 옥탑에 방송공동수신 설비(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향후 설치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6동과 210동에 이동통신용 설비(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향후 설치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통행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 가스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기타배관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가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하게 열리지 않거나 천장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에어컨 실외기는 세대별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에어컨 가동시 그릴창을 개방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팜플렛, 현장사무소의 도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임대안내책자,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홍통 및 드레인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 시 팜플렛 확인 또는 현장사무소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온수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안내책자(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관련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 및 설치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합니다.
- 방범시설은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최상층은 평지붕이며 콘크리트 난간 및 간살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단, 국공립어린이집은 박공지붕)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 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신청시기가 입주일에 근접하여 신청할 경우 배관, 배선 등이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집, 더행복한카페,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등이 있으며, 실내가구나 컴퓨터 등 내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신발장, 파우더장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도배지 등)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뒷면에는 마감재(타일)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 공사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와 인접한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 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각 세대 발코니 및 지하주차장 내부 습기로 인한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일반사항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단지 내·외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냉매배관, 에어컨드레인배관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임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층간, 세대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해당 기준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으며,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임대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사항

- 본 아파트의 인근학교 학생 수용 및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아산복수초등학교, 중학생은 배방학군에 배치 예정입니다.
- 단, 해당 아파트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아산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설정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관할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가 퇴거 시 우리공사에서 내부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여 입주자가 파손(고장), 훼손, 오염시킨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직접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 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수납여부는 주택청약센터(<https://apply.cndc.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 관련 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환경 관련 등급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옴 조성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환경 관련 등급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사회적 약자배려	단위세대	★
		공용공간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법안전 콘텐츠		★★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제연설비			★
내화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외벽(외기직접면함)	적용	절수형 설비	적용
외벽(외기간접면함)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직접면함)	적용	수변전설비	적용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직접면함)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적용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간접면함)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창호(외기간접면함)	적용	고효율LED	적용
고효율 설비 (가정용 보일러, 전동기, 급수 펌프)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일부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873	충청남도개발공사	한신공영(주) (주)우석건설	-	(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주)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 (주)건축사사무소테크뱅크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11. 추가설치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서 서면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하여 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구 분	설치내용	제공대상
출입문손잡이	출입문 손잡이 높이 80~90cm 사이에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현 관	마루귀틀 경사로 설치	
거 실	조명밝기 600 ~ 900럭스(lux)	
	동체감지기 설치(비디오폰에서 동작 On/Off 선택 가능)	
욕 실	비상콜 전화 설치	
침 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 ■ 유의사항

(공정 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최초 계약기간 내 미신청시 신청가능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 공정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제공) 가능한 편의증진시설외에는 별도로 제공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등
- ▶ 신청기간 : 최초계약 체결기간 내 신청(최초계약 체결기간 이후 신청시 신청가능 품목 및 진행가능 여부 변동 가능)
  - 전자계약 체결 시 :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충청남도개발공사 1층 판매부]로 등기우편 송부
    - 보내실 곳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1층 판매부<행복주택 담당자 앞>
    - 유의사항 : 봉투 겉면에 '편의시설 설치 신청서' 반드시 기입
    - 최초계약기간 종료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일반우편 이용시 접수 불가
  - 현장계약 체결 시 : 현장계약 시 신청서와 신청자격 서류 제출

임대문의	· 상담소 : 041)531-4861 · 인터넷 : 충남 꿈비채 홈페이지( <a href="http://www.happyapt.co.kr">http://www.happyapt.co.kr</a> )
인터넷 청약	· PC 및 모바일 : 주택청약센터( <a href="https://apply.cndc.kr/">https://apply.cndc.kr/</a>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주소	· 상담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복수리 1797, JS타워 1층 · 서류제출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1층 판매부 행복주택 담당자 앞

2021.09.27.

**cndc 충청남도개발공사**